

## 16년 경찰승진 형법

### 현쌤 카페

http://cafe.daum.net/kimhyun1133

##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보호관찰 도 형사제재이므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 면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없다.
- ②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 의 해석에 있어 '전화통화'를 면전에서의 대화라고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 ③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행위 후에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소급적용된다 면 이 원칙에 반하다.
- 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 정답 ②

- ① × □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7.6.13, 97도703). 김현형법총론 기출총 정리 P. 20 문 16 ②
- ② □ 대판 2002.12.27, 2002도2539 김현 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6 문 10 □
- ③ ×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 여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다수설).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 리 P. 20 문 15 ②
- ④ ×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9.9.17, 97도3349). 김현형법총론 기출총 정리 P. 22 문 19 ②

#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범죄 후 여러 차례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시법과 재 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형 이 경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 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다.

-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라도 공소시효의 특성상 범죄시에 적용되었던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④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1항)'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 정답 ③

- ① □ 대판 1968.12.17, 68도1324 김현형 법총론 기출총정리 P. 46 문 5 ②
- ② □ 대판 1999.7.9, 99도1695 김현형법 총론 기출총정리 P. 45 문 4 ②
- ③ × □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 사실에 적용될 <u>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u> 공소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대판 2008.12.11, 2008도4376).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48 문 10 ⓒ
- ④ □ 대판 1994.5.10, 94도563 김현형법 총론 기출총정리 P. 47 문 8 ①

# 3.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 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 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 ② 구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교통사고 운전자의 사상자 구호조치의무는 위법한 선행행위의 경우에만 작위의 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은행지점장이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묵시적인 공모에 의한 배임죄의 공모공 동정범이 성립한다.

### 정답 ①

① ○ □ 대판 1994.4.26, 93도1731 김현형법 총론 기출총정리 P. 76 문 6 ②



## 16년 경찰승진 형법

현쌤 카페

http://cafe.daum.net/kimhyun1133

- ② ×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판 2002.5.24, 2000도1731).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77 문 7 ④
- ③ × □ 포함된다(대판 1996.9.6, 95도2551).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79 문 11 ©
- ④ × ⇨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대판 1984.11.27, 84도1906). 김현형법총론 기출 총정리 P. 76 문 5 ④

## 4.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임산부를 강타한 것이 그 이후 낙태로 이어지고, 그 에 따른 심근경색으로 임산부가 사망한 경우, 피고 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②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甲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乙은 당구큐대로 화장실 문을 내리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④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②

- ① □ 대판 1972.2.28, 72도296 김현형법총 론 기출총정리 P. 100 문 2 ①
- ② × □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판 2001.6.1, 99 도5086; 휴즈콕크 사건). 김현형법총론 기 출총정리 P. 90 문 3 ③

- ③ □ 대판 1990.10.16, 90도1786 김현형법 총론 기출총정리 P. 90 문 3 ④
- ④ □ 대판 2000.9.5, 2000도2671 김현형법 총론 기출총정리 P. 92 문 6 ②

## 5. 고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 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눌러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 되지 않는다.
- ②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③ 의무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항의하던 택시운전 자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여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의무경찰의 무릎을 들이받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 ④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 정답 ①

- ① × ➡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대판 2002.2.8, 2001도6425).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05 문 4 ④
- ② □ 대판 1983.3.22, 83도231 김현형법총 론 기출총정리 P. 105 문 3 ③
- ③ □ 대판 1995.1.24, 94도1949 김현형법총 론 기출총정리 P.107 문 7 ④
- ④ □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4.4.10, 2012도8374).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13 문 3 ③
- 6. 과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 2 - 김현 형법



## 16년 경찰승진 형법

현쌤 카페

http://cafe.daum.net/kimhyun1133

- ① 차량의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는 사태를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 ②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뛰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몰래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보기 어렵다.
- ③ 의사 甲이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겼는데,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를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골프경기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 원(캐디)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위반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정답 ④

- ① □ 대판 1993.2.23, 92도2077 김현형법 총론 기출총정리 P. 126 문 2 ④
- ② □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손님이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관리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2010.2.11, 2009도9807; 찜질방 발한실 사건).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22 문6 ③
- ③ □ 의사는 당해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 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8.2.27, 97도2812; 혈액교체 사건).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107 문 7 ④
- ④ × □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8도6940; 골프장 캐디사건).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20 문 3 ③

# 7.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 ② 강도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강도가격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은경우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 ③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 ④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 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 한다.

### 정답 ④

- ① □ 교사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 이 있는 때에는 성립한다(대판 1997. 6.24, 97 도1075).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34 문 2 ④
- ② □ 대판 1985.1.15, 84도2397 김현형 법총론 기출총정리 P. 136 문 5 □
- ③ □ 대판 1988.11.8, 88도1628 김현형법 총론 기출총정리 P.136 문 6 ④
- ④ × □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1990.9.25, 90도1596; 삿대질 사건).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40 문 6 ③

### 8.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거주지 연립주택 내 도로의 차량통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려고 길을 막은 아버지 앞으로 운전자가 차를 그대로 진행시키자 이를 막으 려고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아들 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② 검사가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③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



### 16년 경찰승진 형법

현쌤 카페

http://cafe.daum.net/kimhyun1133

- 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 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 ④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 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깍기에 달린 줄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다.

#### 정답 ③

- ① □ 대판 1986.10.14, 86도1091 김현 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51 문 2 ③
- ② □ 대판 2006.9.8, 2006도148 김현형 법총론 기출총정리 P. 153 문 5 ①
- ③ × □ 그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3.8.24, 92도1329).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156 문 4 ④
- ④ □ 대판 1970.9.17, 70도1473; 손톱깎이 칼 사건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59 문 1 ③

# 9.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의사 甲이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모발이식시술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지닌 간호조무사로 하여 금 모발이식용 기기로 모발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채 별반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甲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② 신고된 甲대학교에서의 집회가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아니한 甲대학교측의 요청으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저지되자, 신고 없이 乙대학교로 옮겨 집회를 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선장 甲은 피조개 양식장 앞의 해상에 허가 없이 선박을 정박시켜 놓고 있다가 태풍이 내습하자 선원들과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닻줄을 늘여 정박하였는데, 태풍이 도래하여 풍랑이 심하게 이는 바람에 늘어진 닻줄이 피조개 양식장 바다 밑을 쓸고 지나가면서 양식장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정답 ①

- ① × ▷ 위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판 2007.6.28, 2005도8317).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79 문 6 ④
- ② □ 그 신고 없이 한 집회를 급박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0.8.14, 90도870). 김현형법총론 기출총 정리 P. 162 문 1 ④
- ③ □ 대판 1976.7.13, 75도1205 김현형법총 론 기출총정리 P.152 문 4 ②
- ④ □ 아 이는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 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긴급 피난으로서 재 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87.1.20, 85도221; 피조개 양식장 사건).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65 문 4 ③

# 10.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남편이 내연녀의 방에서 간 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 하에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 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현장사진을 촬영할 목적으 로 그 방에 침입한 경우
- ② 신문기자인 甲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 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경우
- ③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진 경우
- ④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 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 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 정답 ①

- ① ×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u>수단과 방</u>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의 간통 또는 불륜관계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이와 같은 주거침입이 <u>긴급하고 불가피한</u>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3.9.26, 2003도3000).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68 문 1 ①
- ② □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 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u>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범위</u> 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대판



## 16년 경찰승진 형법

현쌤 카페

http://cafe.daum.net/kimhyun1133

2011.7.14, 2011도639). 김현형법총론 기출 총정리 P. 178 문 4 ①

- ③ □ 위와 같은 여흥은 임시총회 중 찬반투 표를 실시하고 <u>남는 시간에 부수적으로 치러진 행사로서 위와 같은 여흥활동만을 따로 떼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u>(대판 1994.2.22, 93도613). 김현형법 총론 기출총정리 P.187 문 4 ②
- ④ □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1999.1.26, 98도3029; 현행범 흉부찰과상 사건).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80 문 8 ④

# 11.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 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②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관련된 금지규범을 알지 못 한 경우도 그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 ③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 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으로 족하며,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 요는 없다.
- ④ '타인의 상품과 피고인의 상품이 유사하지 않다'라는 변리사의 감정결과와 특허국의 등록사정을 믿고 발 가락 5개의 양말을 제조·판매한 경우, 형법 제16조 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 정답 ②

- ① □ 형법 제16조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222 문 9 ①
- ② × □ 법률의 부지로, 판례는 법률의 부지를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대 판 1985.4.9, 85도25). 따라서 그 부지에 정당 한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한다.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224 문 11 ①
- ③ □ 대판 1987.3.24, 86도2673 김현형법총 론 기출총정리 P.205 문 1 ②
- ④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판 1982.1.19, 81도646; 발가락 양말사건).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223 문 10 ③

### 12.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상의 주머니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 을 더듬은 때
- ② 공범들이 피해회사 건물의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 중 1명이 그 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해 담에 붙어 걸어간 때
- ③ 평소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보 경우
- ④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범이 위 차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위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때

### 정답 ③

- ① ➡ 절도의 범행은 예비단계를 지나 실행에 착수하였다(대판 1984.12.11, 84도2524). 김 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260 문 10 ①
- ② ⇨ 물색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9.9.12, 89도1153). 김현형법총론 기출총 정리 P. 257 문 5 ©
- ③ × □ 절도의 예비행위는 될지언정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83.3.8, 82도2944).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254 문 1 ©
- ④ □ 대판 1986.12.23, 86도2256 김현형법 총론 기출총정리 P. 260 문 10 ④

# 13.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② 부하들이 흉기를 들고 싸움을 하고 있는 도중에 폭력단체의 두목급 수괴 뛰이 사건 현장에서"전부 죽이라"고 고함을 치자, 그 부하들이 피해자들을 난자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 甲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 ③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주도한 甲이,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자 단지'어?'라



## 16년 경찰승진 형법

현쌤 카페

http://cafe.daum.net/kimhyun1133

고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여 공모자들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경우, 甲은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 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 정답 ④

- ① □ 대판 1997.6.27, 97도163 김현형법총 론 기출총정리 P. 308 문 9 ③
- ② □ 부하들이 흉기들을 소지하고 있어 살상의 결과를 초래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전부 죽이라는 고함을 친 행위는 <u>부하들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로써 위 싸움에 가세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어</u>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판 1987.10.13, 87도1240;서진 룸싸롱 살인사건).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316 문 5 ③
- ③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4.10, 2008도 1274).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316 문 5 ①
- ④ × □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공 범자 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 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 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대 판 1984.12.26, 82도1373). 김현형법총론 기 출총정리 P. 305 문 5 ③

## 14. 교사·방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입영기피를 결심한 자에게"잘 되겠지, 몸 조심하라" 고 하고 악수를 나눈 행위는 입영기피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 ② 절도범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장물을 취득하여 온 자 가 절도범들에게 드라이버 1개를 사주면서"열심히 일을 하라"라고 말한 것은 절도의 교사가 된다.
- ③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 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 로 봄이 상당하다.

④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예비의 단계에 그친경우에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정답 ①

- ① × □ 입영기피의 범죄의사를 강화시킨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3.4.12, 82도43).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351 문 1 □
- ② □ 그 취지는 종전에 丁과 같이 하던 범위의 절도를 다시 계속하면 그 장물은 매수하여주겠다는 것으로서 절도의 교사가 있었다고 보아야한다(대판 1991.5.14, 91도542). 김현형법총론기출총정리 P. 336 문 1 ②
- ③ □ 대판 1997.6.24, 97도1075 김현형법총 론 기출총정리 P.338 문 5 ①
- ④ □ 대판 1976.5.25, 75도1549 김현형법 총론 기출총정리 P. 347 문 5 ©

## 15. 살인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 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가격하여 피 해자를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
- ②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이상 자살교사죄에 해당한다.
- ③ 살인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
- ④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없다.

#### 정답 ②

- ① □ 대판 2000.8.18, 2000도2231 김현형법 각론 기출총정리 P. 14 문 7 ④
- ② × □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다(대 판 1987.1.20, 86도2395). 따라서 보통살인죄



## 16년 경찰승진 형법

현쌤 카페

http://cafe.daum.net/kimhyun1133

- 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김현형법각론 기출총 정리 P. 17 문 13 ①
- ③ □ 대판 2006.4.14, 2006도734 김현형법 각론 기출총정리 P.18 문 1 ①
- ④ □ 대판 2007.6.29, 2005도3832 김현형 법각론 기출총정리 P. 15 문 10 ①

## 16.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난소를 이미 제거하여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 우에 따라서는 폭행에 포함될 수 있다.
- ④ 상습적으로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 처벌한다.

#### 정답 ①

- ① × □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u>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u>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대판 1993.7.27, 92 도2345; 자궁적출사건). 김현형법각론 기출총 정리 P. 24 문 6 ①
- ② ⇨ 대판 2003.7.11, 2003도2313 ; 간호사 멍사건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17 문 13 ①
- ③ □ 대판 2003.1.10, 2000도5716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24 문 6 回
- ④ ⇨ 형법 제263조, 형법 제257조

# 17. 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기죄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 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 ② 甲이 乙에게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乙을 구호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법률이나 계약에 제한되지 않고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④ 술에 취한 甲과 乙이 우연히 같은 길을 가다가 개울에 떨어져 甲은 가까스로 귀가하고 乙은 머리를 다쳐 앓다가 추운 날씨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甲은 무죄이다.

### 정답 ③

- ① □ 대판 1988.8.9, 86도225 김현형법각 론 기출총정리 P. 44 문 1 ③
- ② □ 포괄하여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이 성립 한다(대판 1980.6.24, 80도726). 김현형법각 론 기출총정리 P. 45 문 3 ①
- ③ × □ <u>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만이 주체</u>이다(대판 1977.1.11, 76도3419). 김현형법각론기출총정리 P.60 문 4 ©
- ④ □ 일정 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u>법률상·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u>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판 1977.1.11, 76도3419). 김현형법각론 기출총 정리 P. 46 문 2 ①

# 18.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 ③ 피해자와 언쟁 중"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당시의 주위 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 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甲정당의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에 화가 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그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 16년 경찰승진 형법

현쌤 카페

http://cafe.daum.net/kimhyun1133

정답 ④

- ① □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 체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55 문 12 ①
- ② □ 대판 1998.3.10, 98도70 김현형법각 론 기출총정리 P. 55 문 12 ②
- ③ □ 대판 1986.7.22, 86도1140 김현형법 각론 기출총정리 P.60 문 4 □
- ④ × □ 피고인은 甲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甲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8.17, 2011도10451).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49문 3 ①

# 19. 체포와 감금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체포·감금죄는 행동의 자유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신병자나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 ②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③ 감금의 방법은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 ④ 수용시설에 수용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 방지를 위해 취침시간 중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경우, 감금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정답 ①

- ① × □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대판 2002.10.11, 2002도4315). 한편,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 장이다.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64 문 10 ①
- ② □ 대판 1982.6.22, 82도705 김현형법 각론 기출총정리 P. 64 문 10 ④
- ③ □ 대판 1998.5.26, 98도1036 김현형 법각론 기출총정리 P.62 문 7 ①
- ④ □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못 볼 바 아니어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8.11.8, 88도1580; 형제복지원사건). 현쌤 한눈에 형법 P. 191

## 20. 강간과 추행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 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 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 ②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 ③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교 요구에 불응하면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으며 폭력조직 부하들을 동원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 ④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임을 요한다.

정답 ④

- ① □ 대판 2013.5.16,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81 문 6
- ② □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3.9.26, 2013도5856; 보복목적 추행사건 ∵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 ○).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80 문 5 ④
- ③ □ 대판 2007.1.25, 2006도5979 김현형 법각론 기출총정리 P.80 문 5 ①
- ④ ×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 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 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 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 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대판 2007.1.25, 2006 도5979).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80 문 5 ②



## 16년 경찰승진 형법

현쌤 카페

http://cafe.daum.net/kimhyun1133

# 21.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②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현역 시의회의원이 후보자 가 되려는 자에 대해서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방의 말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 이 없다.
- ③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 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④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 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 조 현혹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 정답 ③

- ① × ➡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는 <u>천고죄이다</u>(형 법 제312조 제1항).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94 문 3 句
- ② × □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대판 1996.7.12, 96도1007). 김 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94 문 2 ②
- ③ □ 대판 2000.5.16, 99도5622 김현형법 각론 기출총정리 P. 108 문 6 □
- ④ × ▷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9.3.14, 88도1397). 김현형법각론 기출총 정리 P. 108 문 6 €

# 22.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는 적법하여야 한다.
- ②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④ 대학의 컴퓨터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직원이 전보 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운영 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 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컴 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정답 ①

- ① ×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현형법각론기출총정리 P. 135 문 1 ②
- ② □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3.6.14, 2013도3829 ; 교실에서 깽판 친 학부모 사건). 김현형법각론 기출총 정리 P. 122 문 4 ①
- ③ □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10.28, 2004도1256).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124 문7 ①
- ④ □ 대판 2006.3.10, 2005도382 김현형법 각론 기출총정리 P. 122 문 4 ③

# 23.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관례에 의함)

- 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②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 ③ 야간에 아파트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 대상 아파트 창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창문을 열어 보는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김현 형법



### 16년 경찰승진 형법

현쌤 카페

http://cafe.daum.net/kimhyun1133

### 정답 ②

- ① □ 대판 2009.8.20, 2009도3452 김현형 법각론 기출총정리 P. 146 문 1 ②
- ② × ➡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형법 제 322조).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152 문 10 □
- ③ □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대판 2006.9.14, 2006도2824; 출입문 당겨본 사건).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148 문 4 ④
- ④ □ 대판 2003.5.30, 2003도1256; 아빠야 사건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156 문 2 ③

## 24.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②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써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어음의 소지를 침해하여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이 피해자 경영의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④ 물건의 운반을 의뢰받은 짐꾼이 그 물건을 의뢰인에 게 운반해 주지 않고 용달차에 싣고 가서 처분한 경우에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 정답 ④

- ① 다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판 1998.4.24, 97도3425; 감 절취 사건). 김현형 법각론 기출총정리 P. 184 문 5 ④
- ② □ 대판 1976.1.27, 74도3442 김현형법각 론 기출총정리 P. 187 문 9 Э
- ③ □ 위 순금목걸이 등은 <u>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u> <u>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u> 이를 절도죄 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대판

1994.8.12, 94도1487; 금은방 사건). 김현형 법각론 기출총정리 P.194 문 1 ②

④ × □ 피고인 단독으로 위 점포에 가서 맡긴 물건을 운반해 줄 것을 의뢰한 경우, 피고인의 위 운반을 위한 소지관계는 <u>피해자의 위탁에 의한 보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u> 이를 영득한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u>횡령죄를 구성한다</u>(대판 1982.11.23, 82도2394). 김현형법각론 기출총 정리 P. 189 문 11 ③

# 25.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 받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하였다면, 甲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②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 게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 ③ 강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 ④ 甲이 날치기 수법으로 乙이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乙을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乙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은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 정답 ①

- ① × □ [1] <u>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u> 의 객체는 재물이다.
-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26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의 지급을 면하고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고, 재물을 객체로 한 것이 아니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4.5.16, 2014도2521).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09 문 16 ③
- ② □ 대판 2004.10,28, 2004도4437 김현형 법각론 기출총정리 P. 201 문 3 ©
- ③ □ 대판 1992.7.28, 92도917 김현형법각 론 기출총정리 P.201 문 3 ①
- ④ ▷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진 강제력으로서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도 치상죄의 성립이 인정된다(대판 2007.12.13, 2007도7601; 5m 끌고 간 사건).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07 문 13 ①



### 16년 경찰승진 형법

현쌤 카페

http://cafe.daum.net/kimhyun1133

# 26.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므로,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아래 들어가 그의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였더라도 재물의현실의 인도가 없었다면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할수 없다.
- ② 예금주인 甲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 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 우,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녹동달오리골드'(누에, 동충하초, 녹용 등을 혼합·제 조)라는 제품이 성인병에 특효약이라고 허위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인정된다.
- ④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이다.

#### 정답 ③

- ① □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3.5.16, 2001도1825).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34 문 25 ①
- ② □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5.27, 2010도3498).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35 문 26 ②
- ③ × □ <u>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u>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대판 2004.1.15, 2001도1429; 녹동 달오리골드 사건).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55 문 8 ④
- ④ □ 전자는 절도죄가(대판 2002.7.12, 2002도 2134), 후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6.7.27, 2006도3126).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41 문 36 ④

# 27.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 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협박으로 평가 될 수 있 어 공갈죄가 성립한다.
- ②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 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 하다.
- ③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 로 되는 것이다.
- ④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자가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등기를 자신의 앞으로 둔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전매차익을 받아낸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 정답 ①

- ① × □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u>길흥화</u>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u>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u>(대판 2002.2.8, 2000도 3245).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67 문 2
- ② □ 대판 2002.2.8, 2000도3245 김현형 법각론 기출총정리 P. 267 문 2 ②
- ③ □ 대판 1992.9.14, 92도1506 김현형법 각론 기출총정리 P.267 문 2 ④
- ④ □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공갈죄를 구성한다(대판 1991.9.24, 91도1824).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72 문 10 □

# 28.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채권양수인의 승낙 없이 자신 의 동생에게 빌려준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 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 으로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자신의 채권 변



## 16년 경찰승진 형법

현쌤 카페

http://cafe.daum.net/kimhyun1133

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돈의 일부를 접대비 명목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 하려고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으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 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 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정답 ①

- ① × 다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 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9. 4.15, 97 도666 전원합의체).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87 문 14 ④
- ② □ 위 경우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따라서 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판 1999.2.23, 98도 2296).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87 문 15 □
- ③ □ <u>비자금 조성 당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u> <u>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것인바</u>, 위 비자금 조성행 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대판 2010.5.13, 2009도1373 ; 비자금 조성사건).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283 문 8 ④
- ④ □ <u>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u> 한 <u>것이 되어</u>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2.8.23, 2002도366).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92 문 22 ②

# 29.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 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③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 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가 속한 재벌그룹의 前 회장 이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소득세의 납부를 위하여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정답 ②

- ① □ 대판 2008.4.24, 2008도1408 김현형 법각론 기출총정리 P. 318 문 8 ①
- ② × 다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는 담보계약상의 민사채무일 뿐 그와 같은 형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위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97.12.23, 97도2430).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318 문 8 ②
- ③ □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u>계불입금을 징수하지</u>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u>계금지급</u> 의무는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 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 정을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 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판 2009.8.20, 2009도3143).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324 문 16 ④
- ④ □ 대판 2010.10.28, 2009도1149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322 문 14 ③

# 30. 장물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장물죄는 재산범인 본범이 영득한 재물에 사후적으로 관여하는 사후종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도죄보다 법정형을 가볍게 규정하고 있다.
- ②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고, 위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죄에 해당하 지 않는다.
- ③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도 장물을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
- ④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 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다 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 정답 ④

① × 🖒 형법은 장물죄(7년 이하의 징역)를 절 도죄(6년 이하의 징역)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 16년 경찰승진 형법

현쌤 카페

http://cafe.daum.net/kimhyun1133

있다.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359 문 7

- ② × □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여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킨 경우에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한다(대판 1987.10.13, 87도1633).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360 문 9 ③
- ③ × □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 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 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3.5.13, 2003도1366). 김 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359 문 8 ②
- ④ □ 위 귀금속의 <u>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장물알</u> <u>선죄가 성립한다</u>(대판 2009.4.23, 2009도1203).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364 문 1 ①

### 31. 손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
- ② 밭에서 재배하였으나 미처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농작물을 매도한 사람이 매수인의 명 인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농작물을 파헤쳐 훼손하였다 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③ 우물에 연결하고 땅속에 묻어서 수도관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스 중 약 1.5m를 발굴하여 우물가에 제처 놓음으로써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한다.
- ④ 자기 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문서손과죄가 성립한다.

#### 정답 ②

- ① □ 대판 1993.12.7, 93도2701 김현형법 각론 기출총정리 P. 368 문 2 ①
- ② × 🖒 매수인이 <u>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농작</u> 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소유

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6.2.23, 95도2754).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368 문 2 ③

- ③ □ 호스 자체를 물질적으로 손괴한 것은 아니라도 <u>그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오스 효용을 해한 것</u>이라고 볼 수 있다(대판 1971.1.26, 70도2378; 고무호스 사건). 김 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367 문 1 ④
- ④ □ 대판 1987.4.14, 87도177 김현형법 각론 기출총정리 P. 368 문 2 ②

### 32. 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불을 놓아 무주물의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 ② 타인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연소죄가 성립한다.
- ③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④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를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 정답 ②

- ① ○ '무주물'은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 167조 제2항의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10.15, 2009도7421). 김현형법각론 기출 총정리 P. 397 문 3 ②
- ② × □ 연소적는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물건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현주공용건조물 또는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물건에 연소한 경우에 성립하는 진 정결과적 가중범이다(형법 제168조). 김현형 법각론 기출총정리 P. 397 문 3 ①
- ③ □ 대판 2002.3.26, 2001도6641 김현형 법각론 기출총정리 P.400 문 7 ①
- ④ □ 대판 1998.12.8, 98도3416 김현형법 각론 기출총정리 P. 397 문 3 ③



## 16년 경찰승진 형법

현쌤 카페

http://cafe.daum.net/kimhyun1133

# 33.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 명의의 문서에 있어서 그 문서 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여부는 위조죄 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②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③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 ④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하여 허위사 실을 기재한 공사실적증명원을 구청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 로부터 기재된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 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정답 ④

- ① □ 대판 2003.9.26, 2003도3729 김현형법각 론 기출총정리 P. 474 문 13 ③
- ② □ 대판 1999.5.14, 99도202 김현형법각 론 기출총정리 P. 436 문 11 ③
- ③ □ 대판 2000.9.5, 2000도2855 김현형 법각론 기출총정리 P.430 문 1 ②
- ④ × □ 모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 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문 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 판 2001.3.9, 2000도938).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430 문 1 ①

# 34. 도박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 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별 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 어 그 지배하에 도박 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을 묻지 않는다.

- ③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내국 인의 도박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폐광지역 카지노출 입을 허용하는 국내법을 유추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가 성립하다.

### 정답 ③

- ① □ 대판 2011.1.13, 2010도9330 김현형 법각론 기출총정리 P. 487 문 5 ①
- ② □ 대판 2009.12.10, 2008도5282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481 문 3 ③
- ③ × □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위법성이 조각되지아니한다.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486 문 3 ①
- ④ □ 대판 1984.4.24, 84도195 김현형법 각론 기출총정리 P. 485 문 1 ④

### 35.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예비군 중대장 甲은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 사실을 알았지만,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 사실을 고의 로 은폐할 목적으로 당해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석 한 양 허위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성, 행사한 경우
- ② 당직사관이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화투놀이를 한 후 애인과 함께 자고나서 당직근무의 인수·인계 없이 퇴근한 경우
- ③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 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 은 경우
- ④ 경찰관 甲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기 재해 두지 않은 경우

#### 정답 ①

① × □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 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직무유 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만



### 16년 경찰승진 형법

현쌤 카페

http://cafe.daum.net/kimhyun1133

<u>성립한다</u>(대판 1982.12.28, 82도2210). 김현형법 각론 기출총정리 P. 508 문 11 ②

- ② □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대판 1990.12.21, 90도2425 ; 학군단 당직사관 사건). 김현형법 각론 기출총정리 P. 533 문 1 ④
- ③ □ 경찰관의 이와 같은 행위는 습득물을 단순히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거나 소유자를 찾아서 반환하도록 협조를 구한 정도를 벗어나 상회 운영자에게 그 습득물에 대한 임의적인 처분까지 용인한 것으로서 습득물 처리지침에 따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02.5.17, 2001 도6170).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519 문 28 ②
- ④ □ 대판 2008.2.14, 2005도4202 김현형 법각론 기출총정리 P. 519 문 28 ①

### 36.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 측의 뇌물수수 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 여죄로 처벌한다.
- ③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④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된 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정답 ②

- ① □ 대판 2006.2.24, 2005도4737 김현형 법각론 기출총정리 P. 505 문 7 ①
- ② × □ 재물의 교부자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u>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u>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4.12.22, 94도2528). 김현형 법각론 기출총정리 P. 507 문 9 □
- ③ □ 대판 2012.2.23, 2011도7282 김현형 법각론 기출총정리 P.515 문 22 ④
- ④ □ 대판 1983.2.22, 82도2964 김현형법 각론 기출총정리 P. 516 문 16 ©

# 37.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면도칼로 가슴을 그어 피를 내어 죽어버리겠다고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해야 한다.
- ③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위계를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성 립한다.

### 정답 ④

- ① ○ 위 <u>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u> 지표시가 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76.3.9, 75도3779).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 리 P. 567 문 6 ④
- ② □ 대판 2011.4.28, 2007도7514 김현형 법각론 기출총정리 P. 548 문 9 ①
- ③ □ 폭행 당시 주차단속 공무원은 <u>일련의 직</u> 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99.9.21, 99도383).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548 문 10 ④
- ④ ×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u>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u>(대 판 2009.11.19, 2009도4166 전원합의체).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557 문 24 ②

# 38. 도주와 범인은닉(도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 ②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더라도 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로 벌할수 없다.
- ③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 16년 경찰승진 형법

현쌤 카페

http://cafe.daum.net/kimhyun1133

④ 참고인이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 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허위진 술을 하여 구속기소되게 하였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 하지 아니한다.

### 정답 ②

- ① □ 대판 1996.6.14, 96도1016 김현형법 각론 기출총정리 P. 572 문 1 ③
- ② × □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대판 2000.3.24, 2000도20).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576 문 8 ③
- ③ □ 비록 임대차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탐문수사나 신고를받아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대판 2004.3.26, 2003도8226).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576 문 8 ②
- ④ □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구속기소됨으로써 실제의 범인이 용이하게 도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참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실제의 범인을 도피시켜 국가의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할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참고인을 범인도피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1997.9.9, 97도 1596).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573 문 2 ④

## 39.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진술의 내용은 반드시 요증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②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방어권남용으로서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하다.
- ③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 ④ 피고인 자신이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했다면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 될 것이고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 정답 ③

① ○ □ 대판 1990.2.23, 89도1212 김현형법 각론 기출총정리 P. 585 문 4 ©

- ② □ 대판 2004.1.27, 2003도5114 김현형 법각론 기출총정리 P. 591 문 14 ②
- ③ × ▷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 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98.4.14, 97도3340).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589 문 10 ②
- ④ □ 대판 1986.9.9, 86도57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588 문 9 ②

# 40.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 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지만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④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 관에게 제출한 이상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 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정답 ①

- ① × □ 위증죄는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바 없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되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증으로 고소·고발한 사실중 위증한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1989.9.26, 88도1533).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603문 8②
- ② □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4.2.8, 93도3445).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600 문 4 ③
- ③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 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무고에 있어서 <u>피무</u>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대



## 16년 경찰승진 형법

현쌤 카페

http://cafe.daum.net/kimhyun1133

판 2005.9.30, 2005도2712). 김현형법각론 기출 총정리 P. 604 문 9 ④

④ ○ □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판 1985.2.8, 84 도2215).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600 문 3 ③